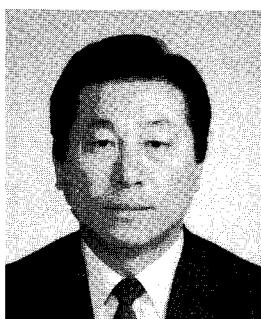


# 634億 투자修築

漁港法·職制改正도 마무리

趙 洪 濟 〈水產廳施設局 漁港課長〉



모든 수산인의 희망인 2000년대 복지어촌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신념속에 출발한 90년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다. 금년 한해도 수차에 걸친 태·폭풍 등 자연재해와 시멘트 등 자재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열악한 현장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60만 우리 어민의 삶의 터전인 어항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사명감속에 부철주야 애쓴 어항인들의 노고덕택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 ■ 90年漁港法개정着手 1·3種港새로指定도

90년도에는 어항시설사업 투자방향을 어선의 안전수용을 위한 외곽시설 완공촉진에 두고 수축사업비 총 578억원을 투자, 방파제 등 5,900m를 시설하여 강원 대진항 등 18개항의 기본시설을 완공하였고 기

존 시설의 유지, 보강사업에도 35억원을 투자, 부산 다대포항 등 4개항의 노후, 취약시설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태·폭풍으로 인한 어항 피해의 최소화와 합리적인 어항개발을 위하여 도두항 기본조사, 어청도항 지질조사 그리고 사동항 수치모델실험을 하였고 신속한 어획물 양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수 국동항 등 31개항의 접안시설(물양장) 소요규모를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시·도지사가 1·3종 어항으로 항종조정을 건의한 60개 2종항 및 소규모항 중 어항법상 지정기준에 대체로 부합되는 27개항을 선정, 지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19개항을 신규지정 또는 항종을 변경함으로써 어항확대개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차적인 사업 이외에도 금년에는 어항발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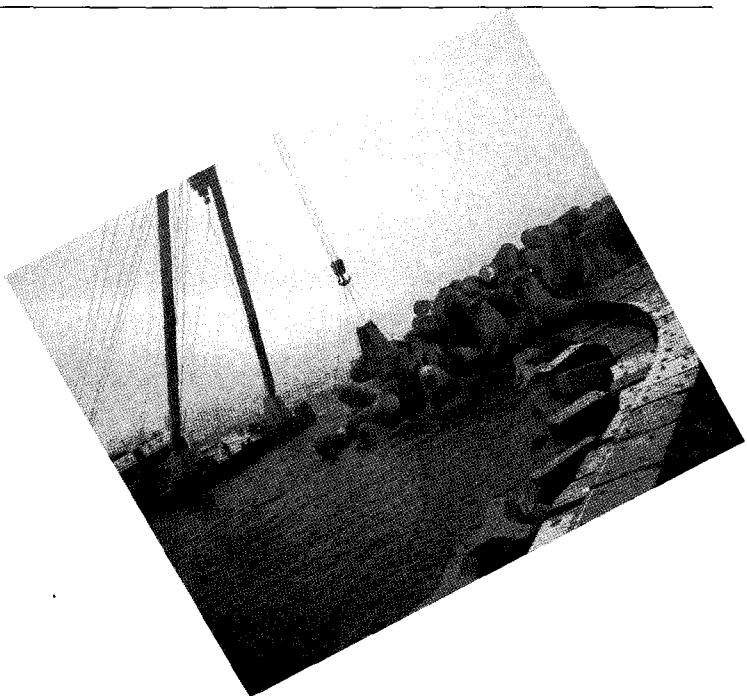
위하여 몇가지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60년도에 제정된 이래 20여년 동안의 급격한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 수산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어항법을 개정하고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 91년도에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어항내 기능시설을 확충하여 어항을 중심으로 어로, 양류, 가공, 출하 등 전 생산과정을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을 겸한 문화 복지시설을 수용하여 도시와의 생활격차 해소와 간접소득을 확대시켜 어민들이 만족감속에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어항시설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어항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나 공공단체만 시행할 수 있는 어항시설사업에 민자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항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현재 지정 개발하고 있는 391개 어항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어선의 안전수용에 미흡함은 물론 항간거리가 평균 33km로서 너무 멀어 조업시간 확보와 기상이변시 장거리 대피 등 어려움이 있어 2000년 대까지는 항간거리를 20km로 단축할 장기계획을 수립, 기틀을 마련하고자 우선 19개항을 1·3종 어항으로 지정, 고시(90. 11. 9)하였다.

셋째, 이제까지 수산청에서 1·3종 어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기능과 설계,



시공감독 등 집행기능을 동시에 관장함으로써 전문인력 부족으로 본래의 기능인 정책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기존 어항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지방기구가 없어 시설물이 훼손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계, 심사, 감독과 어항시설관리 등 집행기능을 담당할 해역별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척도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 開發漁港早期完工 新規어항指定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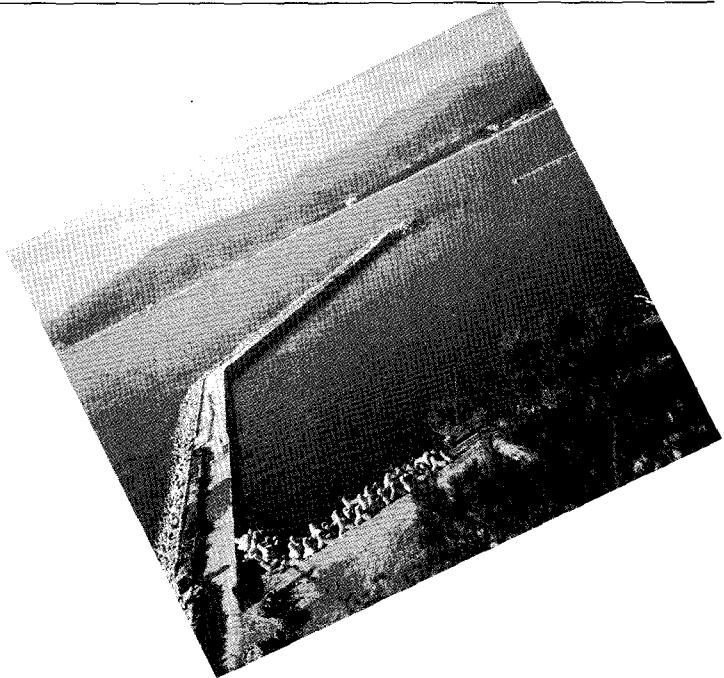
91년도에는 어항시설사업의 투자방향을 이미 계획하여 개발중인 항의 조기완성 촉진과 어항개발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에 두고 수축사업에 634억원을 투자, 안홍항 등 20개항의 기본시설을 완성하고 유지 보강

사업에도 45억원을 투자, 노후 및 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으며 어항개발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신규어항 지정의 계속 추진과 어항법 및 척도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어항은 태·폭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동적 기능 위주로 개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어항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어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지역의 정주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개발중인 61개 1·3종 어항의 기본시설을 92년까지는 완성하고 2종 어항의 조기완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92년 이후부터는 총 2조 5,680억원의 사업비를

**91년도에는  
어항시설사업의  
투자방향을  
이미 계획하여  
개발중인 항의 조기완성  
촉진과  
어항개발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에 두고  
수축사업에  
634억원을 투자,  
안흥항 20개항의  
기본시설을 완성하고 유지  
보강사업에도  
45억원을 투자,  
노후 및 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으며  
어항개발 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하여  
신규어항 지정의  
계속 추진과  
어항법 및 직제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하여 신규 어항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정, 개발함으로써 2천년대에는 전 어선의 안전 수용은 물론 조업시간도 확대될 것이고 어항내 기능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어획물의 생산, 양륙 및 유통에 이르는 산업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수산물의 부가가치가 제고되어 어민소득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어촌지역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자연환경과 유물 그리고 관습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며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해양관

광 및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어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레저 시설을 개발하여 관광을 겸한 이상적 복지어촌이 조성될 것이다.

어항은 어민의 삶의 터전이고 어촌지역 사회발전 핵심시설이다. 따라서 어민들이 만족감 속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항을 문화와 복지시설을 겸비한 괘적 정주환경이 완비된 복지 어촌의 핵심시설로서 개발하는 것은 우리 모든 어항인들의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❶

**불법어업 근절하여  
수산자원 보호하자**